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 모두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투자신탁 추가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트러스톤TDF203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4. 트러스톤TDF204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5. 트러스톤TDF205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트러스톤적격TDF203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4. 트러스톤적격TDF204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5. 트러스톤적격TDF205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-	<신설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